

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대회 관리 환경변화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위원회에 내부(개최지 관할 시·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)·외부 위원(심사위원장)을 추가하여 대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유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(제5조제3항).
- 나. 외부 간사에게 외부 운영위원과 동일하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제9조).
- 다. 대회 관리단을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대회 준비를 도모함(제10조).
- 라. 대회 불참 처리시각을 대회개시일 등록마감시각까지로 명확히 하여 대회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함(제13조제1항).
- 마. 참가신청 접수 결과 128개 팀에 미달하거나 불참으로 인하여 4개 팀 1개 조로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 3개 팀 또는 2개 팀 1개 조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, 조 편성 결과 부전승이 발생하는 경우, 대진표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조 편성 및 대진표 작성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함(제17조).

바. 결선은 방송을 통해 사회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사회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제20조제3항).

사. 토론경기 중 자유토론 방법에 있어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시간과 그에 대한 답변시간을 차감하도록 명확히 함(제22조제4항).

아. 심사위원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의 역할을 조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(제25조, 제26조, 제28조, 제31조).

자. 심사표 작성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사에 필요한 보조자료(토론 흐름표)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의제기 또는 심사결과의 공개에 대비함(제27조).

차. 그 밖에 자구 수정

3.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

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개최지 관할 시·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

제5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그 밖의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가. 학회장이 추천하는 학회 임원과 심사위원장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대회와”를 “대회에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9조 중 “외부 위원(제7조제4항의 대회 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)”을 “외부 위원·간사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중앙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”을 “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발견된”을 “발견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참가신청자가”를 “참가신청자가 3일 이내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회개시일에”를 “대회개시일 등록마감시각까지”로, “차기년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조별 편성)”을 “(조 편성 및 대진표 작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참가신청 팀이 128개 팀에 미달하거나 불참하는 팀이 있는 경우에는 3개 팀 1개 조 또는 2개 팀 1개 조로 편성하여 대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부전승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대진표를 작성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분내지 20분 이내”를 “15분 이상 20분 이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각6분”을 “각 6분”으로, “각8분”을 “각 8분”으로 한다.

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결선에는 사회자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사회자는 공정하게 대회를 진행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“질문 시간은 질문한”을 “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수용할 수 있다”를 “수용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를 심사한다.

제25조제3항 중 “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대회 심사위원장(학회 회장 등)”을 “심사위원을 두되, 대회 심사위원장”으로, “위촉하며, 심사위원장은 공동주관하는 학회의 장이 된다”를 “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준비한 심사교육을 반드시”를 “주관하는 심사교육을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7조제4항에 따른 대회 심사위원장”을 “제5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심사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”을 “심사장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사하되,”를 “보조자료([별지2] 토론흐름표)를 작성하여 심사하되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”을 “심사위원장 및 심사장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며,

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그 밖에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이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 중 “해당 경기의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”을 “심사위원장 또는 해당 경기의 심사장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보고하여야”를 “알려야”로 한다.

제31조제4항 중 “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”을 “심사위원장 및 심사장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결선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”을 “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자격”을 “참가자격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제2호”를 “제3호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2를 별지3으로 하고, 별지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3 주⑥ 및 주⑦ 중 “시상기관의장”을 각각 “시상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심 사 표

예선	제()조, 제()심사반	본선	64강, 32강, 16강, 8강	결선	준결승, 결승
찬 성			반 대		
팀 명				팀 명	
성 명				성 명	
평가 영역 (배점)	평 가 항 목			평가 영역 (배점)	
/10	기조 연설	○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?		기조 연설	/10
/40	자유 토론	○ 논점을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가?(내용 구성력) ○ 상대논리의 약점/모순점을 찾아낸 질문인가?(창의력 순발력) ○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는가?(이해력, 대응력) ○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가?(일관성)		자유 토론	/40
/10	맺음말	○ 주장을 설득력 있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였는가?		맺음말	/10
/20	전달력	○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였는가? (메타포 등 사용 여부, 어휘, 문장구사력) ○ 음성 전달은 적절하였는가?(빠르기, 크기, 고저, 강조, 어조)		전달력	/20
/20	토론 태도 탐워크	○ 자세와 태도는 적절하며 토론 예절을 잘 지켰는가? (말꼬리 잡기 여부, 토론 자세 등) ○ 협력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는가?		토론 태도 탐워크	/20
	감점	규정 제21조제2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(5점범위이내)		감점	
총 점	찬성팀 심사의견		반대팀 심사의견		총 점
	○ ○		○ ○		
심사위원 성명 :			서명 :		

※ [별지2] 토론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하고, 감점 시 심사의견란에 감점사유를 반드시 기재

[별지2]

토 론 흐 릑 표

구 분	찬 성	반 대
팀 명		
기조연설		
자유토론		
맺음말		
비 고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조직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내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· 나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2. 외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<u>학회 임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<u>그 밖의</u>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 <p>제6조 (직무) ①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그 밖에 <u>대회와</u> 관한 사항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7조 (운영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대회 심사위원장(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)은</u>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에</p>	<p>제5조 (조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<u>개최지 관할 시 ·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</u></p> <p>2. 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<u>학회장이 추천하는 학회 임원과 심사위원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 (직무) ①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대회에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 (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다만,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
제9조 (수당의 지급)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외부 위원(제7조제4항의 대회 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) 및 자문위원에게는 「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사무분장) 운영위원회 내에 대회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대회 관리단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 (신청 보완 및 불참) ① 참가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마감일 다음날 부터 3일 이내에 직접 보완할 수 있으며, 중앙토론위원회가 흠결을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참가신청자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1조의 참가자격 및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중앙토론위원회가 이를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함에도 참가신청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

제9조 (수당의 지급) -----
----- 외부 위원·간사 -----

-----.

제10조 (사무분장) -----
----- 각 -----
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-----.

제13조 (신청 보완 및 불참) ① ---

- 발견한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참가 -----
신청자가 3일 이내에 -----

본다.

③ (생략)

④ 정당한 사유없이 대회에 불참 (대회개시일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)하는 경우 차기년도 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.

제17조 (조별 편성) ① 예선대회의 조 편성은 4개 팀 1개 조로 한다. 다만, 불참하는 팀이 있는 경우 3개 팀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19조 (예선 및 본선) ① 경기진행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, 1회의 총 경기시간은 15분내지 20분 이내로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찬성팀과 반대팀 간 자유토론 (예선은 각6분, 본선은 각8분)

4. 5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20조 (결선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대회개시일 등록마감시각까지 -
----- 다음
연도 -----.

제17조 (조 편성 및 대진표 작성) ① -----.

다만, 참가신청 팀이 128개 팀에 미달하거나 불참하는 팀이 있는 경우에는 3개 팀 1개 조 또는 2개 팀 1개 조로 편성하여 대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부전승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대진표를 작성한다.

제19조 (예선 및 본선) ① -----

----- 15분 이상 20분 이하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각 6분----- 각 8분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 (결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결선에는 사회자를 별도로 둘

제22조 (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) ① ~ ③ (생략)

④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 시간은 질문한 팀의 발언시간에서 차감한다.

⑤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질문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발언 중 최소 2회의 질문 제기를 수용할 수 있다.

제24조 (심사기준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5조 (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·

② (생략)

③ 결선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대회 심사위원장(학회장 등),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과 국회의원, 변호사 기타 토론 전문가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며, 심사위원장은 공동주관하는 학회의 장이 된다.

④ 심사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준비한 심사교육을 받드시 이

수 있으며, 사회자는 공정하게 대회를 진행하여야 한다.

제22조 (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 -----
-----.

⑤ -----

----- 수용하여야 한다.

제24조 (심사기준 등)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를 심사한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 (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심사위원을 두되, 대회 심사위원장-----

----- 위촉한다.

④ -----
----- 주관하는 심사교육을 -----

수하여야 한다.

⑤·⑥ (생략)

제26조 (심사위원장, 심사장)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대회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27조 (심사원칙) ① 심사위원은 [별표]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⑤·⑥ (생략)

제28조 (심사등에 대한 이의제기)

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경기 방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
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26조 (심사위원장, 심사장) ① 제5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심사위원장은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심사장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 (심사원칙) ① ----- 보조자료([별지2] 토론흐름표)를 작성하여 심사하되, 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-----
--- 경우에는 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그 밖에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이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28조 (심사등에 대한 이의제기)

① -----.

할 수 있되, 본인 경기에 한하여 다음 경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, 해당 경기의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을 통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30조 (참가자 수칙) ① (생략)

② 심사위원 또는 운영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에게 알려야 하며,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팀을 실격처리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31조 (참관자 수칙) ① ~ ③ (생략)

④ 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제3항에 해당하여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참관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이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알려야 한다.

제32조 (불법행위에 대한 제재) ①

다른 참가자가 참가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

----- 심사위원장 또는 해당 경기의 심사장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 (참가자 수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알려야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 (참관자 수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-----

-----.

제32조 (불법행위에 대한 제재) ①

제기는 반드시 결선 심사위원장
또는 심사장을 통해 대회운영본부
에 보고되어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대회운영본부는 제1항의 이의
제기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
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이의제기 대상자의 자격 박탈
이나 정지 결정

2. (생략)

제33조 (시상) ① (생략)

② 단체상 및 개인상, 특별상의 표
창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
다.

----- 심사위원장 또는 심
사장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참가자격

2. (현행과 같음)

제33조 (시상)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제3호 ---
--.